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행정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기획조정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담당관과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지방교정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62명(6급 11명, 7급 14명, 8급 16명, 9급 21명), 출입국사범 관리를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5명(6급 4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10명),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7명(6급 4명, 7급 5명, 8급 12명, 9급 16명), 난민심사를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6명(5급 1명, 6급 5명, 7급 10명) 및 체류외국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2명(6급 4명, 7급 6명, 8급 10명, 9급 12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법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

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무부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법무부 소속기관의 정원 102명(5급 2명, 6급 17명, 7급 21명, 8급 28명, 9급 34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2. 11. ~ 1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중 총계 “795”를 “788”로 하고, 일반직 계 “752”를 “74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743”을 “736”으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22,954”를 “22,852”로 하고, 일반직 계 “22,935”를 “22,83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2,729”를 “22,627”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법무부 정원 7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법무부 소속기관 정원 102명(5급 2명, 6급 17명, 7급 21명, 8급 28명, 9급 3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8]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56조제1항 관련)

1. 법무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1) 법무실 1개 정책관등	1명
2) 인권국 1개 과	9명
3) 국제법무국	1명
4) 국제법무국 2개 과	9명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1명

2. 법무부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1개 과	12명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1)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52명
2) 소년수용자 관리(소년원)	42명
3) 출입국사범 관리(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29명
4)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50명
5) 항만 국경관리(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33명
6)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101명
7) 전자보석 결정전 조사 등(보호관찰소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	53명
8)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34명
9)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13명
10)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계센터)	88명
11) 보호외국인의 관리 및 퇴거전담(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11명
12)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32명
13)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계센터)	20명
14) 출입국사범 관리(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55명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6]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53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총 계	<u>795</u>	<u>788</u>	-7
·	·	·	
·	·	·	
일반직 계	<u>752</u>	<u>745</u>	-7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검사 포함)	<u>743</u>	<u>736</u>	-7
·	·	·	
·	·	·	

[별표 7]

법무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54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2,954</u>	<u>22,852</u>	-102
일반직 계	<u>22,935</u>	<u>22,833</u>	-102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2,729</u>	<u>22,627</u>	-102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72